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27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69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출장소장
변 론 종 결	2019. 10. 24.
판 결 선 고	2019.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주식회사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7년도 지방소득세 2,462,090원 및 가산금 517,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27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3. 12. 11.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2014. 2. 3.부터 위 회사의 감사로, 주주명부상 2014년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위 회사의 30%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B이 2018. 10. 17.을 기준으로 9,930,310원의 지방소득세(법인소득, 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원고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B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10. 17.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2017년도 지방소득세 2,462,090원 및 가산금 517,020원(합계 2,979,1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1].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16. [redacted]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1)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과금액에는 B이 체납한 가산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가산금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청이 확정하는 절차 없이도 지방세기본법 등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므로 가산금 고지를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추상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성립하나 구체적으로는 지방세징수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B이 부담하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체납세액 중 원고가 부담하는 액수를 확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27

1) 원고는 B의 주주로 등재된 경위를 알지 못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B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2) 1차 납세의무자인 B의 재산으로 이 사건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피고의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27

1615 판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의 주주명부상 대표이사인 C과 그 배우자인 D, C의 외사촌인 E와 C의 외숙모인 원고는 각 B의 지분 35%, 30%, 25%, 10%로 합계 100%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으로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주주로 등재될 무렵과 비슷한 시기에 B의 감사로 취임하면서 그 등재에 필요한 서류로 제출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발급한 점, 설령 원고가 구체적으로 B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B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B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27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무렵 확인되는 B의 재산은 이 사건 체납세액을 하회하는 시가표준액 6,006,000원의 차량 1대뿐인 사실, B은 이 사건 체납세액 외에도 합계 93,467,980원에 달하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B에 대하여 이 사건 체납세액에 관한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이연경

판사 민수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27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27

② 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끝.